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노조 파괴 앞장선 노동부는 사과하라

**총회 의결 없이 정족수도 충족 못 하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조직형태변경 의결, 절차상 위법 알고도 승인한 노동부
조합원이 요청한 총회소집, 노조가 요청한 시정명령 의결은 무시**

지난 5월 25일 포스코지회에서는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를 냈고, 6월 2일 지회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단 3명에 불과한 대의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했다. 포스코지회가 포스코자주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자 노동부 포항지청은 6월 12일 승인했다. 하지만 10월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대의원대회의 역할로 규정되어있지 않는 조직형태변경을 총회없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은 유효하지 않다며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포스코지회는 작년 11월 4일 조직형태변경을 위한 첫 번째 총회를 진행했고, 포스코자주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했지만 총회 소집 절차 및 규약 등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어 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다. 11월 30일 진행된 지회의 두 번째 총회는 소집권자 문제로 포스코자주노동조합 설립은 12월 7일 최종 반려되었다.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어 결정된 반려에 대해 보수언론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노동부라는 기사를 쏟아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자 12월 26일 노동부장관은 느닷없이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의 집단 탈퇴를 막았다며 금속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3일 뒤인 12월 29일에는 포항지청이 직접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징계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실을 알렸다. 어떠한 조직보다 자율적,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에 윤석열 정부가 개입해 내부 규약과 징계까지 통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24일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 3명 제명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4월 12일 금속노조의 하부조직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5월 24일에는 서울지법에서 징계당사자들이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다.

징계 당사자들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마자 지회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했고, 단 3명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했다. 포항지부는 즉각적으로 노동부 포항지청에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의결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고 조합원의 과반수에 가까운 33명의 조합원은 지회에 총회소집을 요청했다. 금속노조는 7월 11일 고용노동부에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중대한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고도 6월 12일 포스코 자주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승인했고 조합원들의 총회소집을 거부한 포스코지회에는 아무런 지도도 하지 않았다. 지회의 총회소집 거부로 조합원들이 포항지청에 총회소집을 요청했지만 노조의 총회소집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정명령 의결요청도 무시했다. 포항지청은 포항지부와 조합원들의 문제제기에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포스코지회가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것은 유효하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조직형태변경으로 노조할 권리를 빼앗긴 조합원들은 조직형태변경 결의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금속노조가 제기했던 절차상의 위법을 모두 인정했고, 10월 31일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노동부장관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앞장서기위해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위험의 외주화,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끊임없는 탐욕을 통제해 수익을 국민과 나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절차상 위법을 알고도 모두 묵인하며 포스코라는 철강업종을 상징하는 기업에서 금속노조 깃발을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 법과 상식을 모두 던져버린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에 앞장선 노동부는 즉각 사과하라. 금속노조와 포스코지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조파괴에 맞서 금속노조 푸른깃발을 지켜내고 포스코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당당히 맞서 나갈 것이다.

2023년 11월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첨부자료1) 노조 징계의결 시정명령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직후 예정한 지회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지부에서 포스코지회에 보낸 공문



문서번호 : 금속포항 1-23-05-18

시행일자 : 2023. 5. 31.

수 신 : 원형일 지회장

참 조 : 한대정 수석부지회장, 김준표 사무장

제 목 :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임원권리 및 대의원대회 안건 관련 건

1. 원형일 지회장은 포스코지회 공지사항 페이지에 조직형태변경 건과 포스코지회 규칙 개정 건을 안건으로 하는 지회 대의원대회를 6월 2일 소집하였습니다.

2. 지부 운영위는 2022년 6월 13일 진행된 회의에서 지회 12기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과 CMS 조합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상조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10월 28일 회의에서는 지회 임원들이 지부운영위 회의와 회의에서 결정한 투쟁과 활동에 모두 불참한 점과 지부의 지도를 무시하고 CMS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점 등을 근거로 포스코지회 임원들의 권리 일체를 제한할 것을 결의하고 지부가 직접 집행하는 동시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참고 #4)

3. 노조에서 징계 제명된 임원 3명은 가처분 소송으로 징계 효력 정지를 판결받았습니다. 현재 지부 운영위 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 임원들의 권리는 일체 제한되어 있고 지회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해 지부가 직접 지회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회 임원들의 권리에 대한 부분은 지부운영위 회의를 통해 지회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4. 지회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 올라간 조직형태변경은 지회 규칙의 대의원대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회 대의원대회에 조직형태변경을 안건으로 처리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대의원대회에서 한다면 그것 또한 지회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참고 #1)

5. 현재 포스코지회 지부(지회)대의원은 이상목, 최제성, 김성균, 윤수원입니다. 4명의 대의원 중 김성균(지도위원)과 윤수원(대외협력부장)은 지회 집행위원이거나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로 노조 규약, 지부 규정상 해당 단위(지회)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회는 지회 대의원대회에서는 과반이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안건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참고 #2)

6. 가처분 소송 인용 결정으로 징계 효력 정지를 받은 임원들은 차기 지부운영위(6월 7일)

에 참석해서 이후 지부운영위 회의 및 결정한 투쟁과 활동 참석에 대한 입장, 지회 정상화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조 규약, 규정에 따라 주시고, 지회 규칙 중 노조 규약, 규정과 상반된 내용과 의미가 담긴 지회 규칙은 개정할 수 있도록 지부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 #3, #4)

참고 #1, #2, #3, #4는 공문 뒤면에 첨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KOREAN METAL WORKERS' UNION POHANG REGION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88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750-930)전화 (054) 278-1366/팩스 (054)278-1881/ID:(참)금속포항

문서번호 : 금속포항 1-23-06-04

시행일자 : 2023. 06. 07.

수 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참 조 :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제 목 :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관련 지청장 면담 요청 건

1. 귀 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스코지회는 6월 2일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회 대의원대회에는 조직형태변경 건과 지회규칙개정 건이 상정되었고,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와 의결 과정에서 명백한 지회 규칙, 세칙 위반이 확인되었고, 성원의 문제 등도 확인되고 있어 이후 포스코지회가 노조설립 신고를 할 경우 잘못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3.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지회 규칙 제14조(의결사항)에 명시·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에는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노조 규약 제5장 회의 제53조(특별결의)에 따라서만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4. 이번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는 지회 규칙 제16조(안건의 제출)과 회의운영세칙 제2조(대의원칙)도 위반된채 진행되었습니다. 포스코지회 규칙 제 16조(안건의 제출)에는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서를 명기해서 대의원대회 7일 전까지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세칙 제2조(대의원칙)에는 회의 성원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조직해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대회는 7일 전까지 안건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제안 설명서 배포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5. 포스코지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성원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지회에는 4명의 지부(지회)대의원이 있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제3장 기관과 기구 제2절 대의원대회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에는 '조합대의원은 당연직 지부·지회 대의원대회(회의) 성원이 된다. 단, 해당 단위 집행 간부는 해당 단위 대의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부규정 제2절 대의원대회 제16조(대의원 배정기준)에는 '지회 임원과 지회 집행위원을 제외하고 지부 대의원은 당연직 지회 대의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지회 대의원 중 김성균과

윤수원은 지회지도위원과 대외협력부장으로 집행위원이거나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로 노조 규약, 지부 규정상 지부대의원은 될 수 있지만 해당 단위인 지회 대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회대의원이 될 수 있는 대의원은 두명으로 어떠한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6. 위의 내용 등에 따라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조직형태변경은 무효입니다. 포스코지회가 대의원대회 의결 결과를 근거로 노조설립신고를 한다고해도 위 내용을 근거로 노조설립은 반려되어야 합니다.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 조직형태변경 관련 내용 소통과 노동부 포항지청 행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지청장과의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황우천



첨부자료3) 포스코지회에 대의원대회 성원 및 조직형태변경 안건 의결에 대한 문제를 알리는 공문



문서번호 : 금속포항 1-23-06-05
시행일자 : 2023. 06. 07.
수 신 : 포스코지회
제 목 : 대의원대회 성원 및 안건 의결 관련 건

1. 노조 할 권리 쟁취! 민주노조 사수!

2. 포스코지회는 6월 2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 건과 지회규칙개정 건을 의결했습니다. 지부는 5월 31일 공문[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임원권리 및 대의원대회 안건 관련 건]을 통해 지회는 지회 규칙 14조(의결사항)에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건을 의결할 수 없으며, 안건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이므로 이 또한 지회 규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렸습니다.

3. 이번 대의원대회는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성원조차 갖춰지지 않은채 진행된 회의입니다. 현재 지회에는 4명의 지부(지회)대의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의원 중 김성균은 지회 지도위원이고, 윤수원은 지회 대외협력부장으로 집행위원이거나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자로 노조 규약, 지부 규정상 지부대의원은 될 수 있지만 해당 단위인 지회 대의원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회대의원이 될 수 있는 대의원은 두명으로 어떠한 안건도 의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뿐만아니라 이번 대의원대회는 대의원대회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내용 설명도 없었고, 제안 설명서도 배포되지 않은채 진행되었습니다. 포스코지회 규칙 제 16조(안건의 제출)에는 대의원회의 부의 안건과 관련해서 제안 설명서를 명기해서 대의원대회 7일 전까지 배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운영세칙 제2조(대의원칙)에는 회의 성원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조직해서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의원대회는 지회 규칙과 세칙을 위반된채 진행된 대의원대회로 모두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5.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존재하는 하부조직입니다. 금속노조는 단일 노조로 노조 규약,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이러한 내용은 지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부는 지회 설립과 지회 규칙, 지회 운영을 위한 연석회의, 지회 비대위 구성 등을 통해 지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해왔습니다. 지부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으로 금속노조 규약,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황우찬



첨부자료4) 포스코지회의 노조 설립 신청을 승인한 포항지청의 입장을 요청하는 공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KOREAN METAL WORKERS' UNION POHANG REGION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88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790-330) /전화 (054) 278-1365/팩스 (054)278-1891/ID:(참)금속포항

문서번호 : 금속포항 1-23-06-09

시행일자 : 2023. 06. 13.

수 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참 조 :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제 목 : 포스코 조직형태변경, 노조 설립 승인에 대한 포항지청 입장 요청 건

1. 노동탄압, 반노동 행정이 철폐되길 바랍니다.

2. 귀 지청은 6월 12일 포스코지회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결한 조직형태변경 이후 신고한 노조설립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3.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6월 8일 노동부 포항지청장과 면담을 통해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지부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나 자료를 요청하면 충실히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 반노동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지청이 정권에 휩쓸려 짜여진 행정을 하지 않기를 요청했습니다. 지청장과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은 노동부의 권한을 정권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업무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4. 지회는 대의원대회 7일 전까지 안전에 대한 구두 설명이나 제안 설명서 배포도 하지 않았고, 지회규칙 대의원대회 기능에 포함되지도 않은 조직형태변경을 4명의 대의원의 결정으로 의결했습니다. 지부가 지회 대의원대회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지청은 노조 설립 신고를 승인했습니다.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변경, 노조설립을 승인한 근거에 대한 포항지청의 공식적인 답변과 입장을 요청합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황우찬



첨부자료5) 조합원들이 노동부 포항지청에 포스코지회 총회가 이뤄지도록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공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KOREAN METAL WORKERS' UNION POHANG REGION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8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780-380) / 전화 (054) 278-1336 / 팩스 (054) 278-1881 / ID (참금속포항)

문서번호 : 금속포항 1-23-07-05

시행일자 : 2023. 07. 11.

수 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장

참 조 : 근로개선지도1과 과장

제 목 : 포스코지회 총회 소집 및 관련 자료 제출 건

1. 귀 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6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했습니다. 73명의 조합원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지회 집행부 2명이 포함된 4명의 대의원이 참가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한 것입니다. 이에 33명의 조합원은 지회 규칙을 위반하며 비민주적으로 이뤄진 임시대의원대회 의결에 반대하며 조직형태변경 관련 논의를 위한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총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지부와 지회 조합원은 지청을 찾아가 지회 조합원들이 체크오프를 하지 않는 조합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총회 소집요청 서명지는 총회 소집시 제출하겠다고 지회에 열람 후 총회를 개최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지회가 거부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지회에서 이뤄진 선거 및 총회시 조합원 명부는 어디에도 제출되지 않았고, 조합원들과 지부의 문제제기에도 비밀조합원들의 신분 보호를 위해 열람만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조합원 총회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청이 판단하고 지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 이후 지청은 '총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서명지가 제출되면 총회를 하겠다'는 지회의 입장을 확인하고 총회 소집 요청 서명지를 제출하라고 지도하며 총회 소집 요청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3이 확인되면 총회가 소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청의 지도에 따라 지부는 지회 조합원들을 통해 6월 30일 33명의 조합원 총회 요구 서명지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포스코지회 총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5.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으로 금속노조에 가입했습니다. 탈퇴 또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이뤄져왔고, 금속노조는 포스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침해한 적이 없습니다. 33명의 조합원들은 집행부 2명을 포함한 4명의 대의원이 73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에 반대를 명확히 하고 포스코지회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고자 서명을 했습니다. 지청이 33명 조합원들의 권리를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지부는 포스코지회 조

합원 총회를 위해 관련 자료를 보내오니 지청과 포스코지회가 밝힌대로 총회가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바랍니다.

- 첨부1) 포스코지회 조합원 관련 자료
- 첨부2) 포스코지회 총회 소집요청 서명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황우찬



첨부자료6)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서 질의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와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 의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답변

제목 : 이은주 의원 자료요청

2023. 6. 30.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이은주 의원(김성희 보좌관, 06/26)

1. 포스코지회 조직형태변경 의결, 노조설립신고 관련

1.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절차에 대한 문제

- 1) 대의원대회 부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를 사전에 대의원에게 배포하였는지 확인

□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절차

○ 포스코지회는 2023. 5. 25.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3. 6. 2. 대의원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 대한 소집 공고(붙임 참조)를 하였음

-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변경 안건은 2022. 11. 3., 11. 4.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66.86% 찬성), 11. 28.~11. 30. 실시한 조합원 찬반재투표(69.93% 찬성)와 동일한 안건이었고

- 노조법 제19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포스코지회규칙도 이와 유사함

※ 관련 규정

<포스코지회규칙>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7일 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담당부서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6급 신제현	연락처	054-271-6808
------	-----------------	-----	--------	-----	--------------

【붙임】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문

공지사항

포스코지회 제15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

포스코지회 | 조피수 261 | 추천수 2

2023-05-25 22:08:05

<http://www.pskor.co.kr/notice/board?4988> URL COPY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

소 집 공 고

지회 규칙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제1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아 래-

■ 일시 : 2023년 06월 02일(금) 09:00~18:00

■ 장소 : 금속노동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회의실

[보고사항]

1. 2023사업20051 세방 실적 요약정리 가져본

[안전]

1. 조직정리연간 권
2. 포스코지회 규칙 개정 권

[토론사항]

1. 조합원 모집, 현장 조직화

금속노동 포항지부 포스코지회공 회 령



2. 대의원대회를 통한 조직형태변경 의결에 대한 문제

- 1) 포스코지회규칙에 조직형태변경을 대의원회의 기능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2) 판례(광주지방법원 2007. 4. 5. 선고 2006가합8063 판결)에 비추어보았을 때 조합원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의 총의를 수렴하지 않고 소수의 대의원들이 모인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2. 1) 관련

-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노조법 제17조 제5항) 대의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등 제반사항은 총회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노동조합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해 조합원 총회의 고유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음
-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지회규칙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조직형태 변경이 총회 고유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포스코지회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하였다면 이를 위법한 조직형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포스코지회규칙>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정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2. 2) 관련

- 광주지법 2006가합8063 사건의 경우 판결문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규약 제9조제2항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부 총회 고유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지회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포스코지회규칙 제14조는 일부 총회 고유의 의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의원회에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15조는 대의원회를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포스코지회의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의결기구에 해당함
 -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포스코지회규칙이 조직형태 변경을 총회 고유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노조법 제16조 제1항제8호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결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포스코지회의 경우 총회 소집권자 부적격 등으로 2022. 11. 8. 우리지청에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변경 안건과 관련 조합원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2차례 가결된 바 있으므로

-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대의원회를 통해 가결한 사실만으로 조합원들의 총의를 수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고 판례>

노동조합법은 제16조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들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17조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17조제4항은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약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그 규약에서 총회와 별도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할 것이다(울산지법 2019. 4. 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조직형태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나(제16조 제1항,제2항),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준용된다(제17조 제1항,제4항)… ① 참가인 노조의 규약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운영규정상 이 사건 노동조합은 참가인 노조의 산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은 종래 별도의 설립신고를 하고 참가인 ○○운수와 사이에 개별적으로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던 점, ② 이후 참가인 노조가 완전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의 체제를 구축하자, 참가인 노조 산하지부 중 25개 지부는 대외적 교섭력을 강화하고 행정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하고 그 설립신고증을 없앴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역시 2011. 6. 27. 제1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재적 대의원 전원(8명)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후 그 설립신고증을 폐기한 점, ③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은 “대의원 대회는 총회를 갈음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 대회에서 그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26975 판결 참조)

담당부서	포항지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6급 신제현	연락처	054-271-6808
------	-----------------	-----	--------	-----	--------------



전국금속노동조합

KOREAN METAL WORKERS' UNION

서울시 중구 정동 22-2 경향신문사 별관 6층 (100-702) / 전화 (02)2670-9555 / 팩스 (02)2679-3714

문서번호 : 금속중앙 02-23-07-040

시행일자 : 2023. 7. 11

수 신 : 고용노동부 장관

참 조 : 노사관계법제과

제 목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건

1.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3.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포항지청장과의 면담등을 통하여 충분히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러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의견을 묵살한채 지난 6월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조직형태 변경을 승인하였습니다.

4. 포스코지회가 조직형태변경의 주체가 될수 있느냐의 문제는 법적 쟁점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조직형태 변경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습니다.

5. ①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원은 모든 문제에 대하여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금속노조 규약> 및 <포스코지회 규칙>에는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에 갈음하여 조직형태변경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③ 지회의 대의원 총 9명 중 사퇴한 인원 5명을 제외한 재적 대의원 4명만 참석하여 결의하였고, 위 4명 중 일부는 집행부 상원으로 대의원 자격이 문제되는 점, ④ 지회 규칙에 위반하여 대의인에게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서를 배포하지 않아 의견 수렴 및 토론 기회를 박탈한 점, ⑤ 노조법상 조직형태변경은 개별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원 총의로써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므로 총의를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가 필수라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지회 대의원대회 결의로

조직형태변경을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6.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데 조직형태 변경을 승인해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7. 만약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금속노조를 탈퇴하려고 하는 일부 조합원들과 공모해서 조직형태 변경을 진행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후 모든 책임은 고용노동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8. 아무쪼록 고용노동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금속노조 정책실 김범진 정책실장 ☎ 02-2670-9512, 010-3793-8781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윤 장 혁

첨부자료8) 포스코지회에 총회 소집을 촉구하는 공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KOREAN METAL WORKERS' UNION POHANG REGION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88번지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780-380) / 전화 (054) 278-1366 / 팩스 (054) 278-1891 / ID: (참) 금속포항

문서번호 : 금속포항 1-23-07-07

시행일자 : 2023. 07. 12.

수 신 : 원형일 지회장

참 조 : 김준표 사무장

제 목 : 비민주적 집행 중단, 포스코지회 총회 소집 요청 건

1. 노동자 권리 보장! 금속노조 시수 투쟁!

2.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6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직형태변경을 의결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전인 5월 31일, 조합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포스코지회 대의원의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세부내용 요청이 무시되었고, 임시대의원대회 이후에는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의 충분한 토론회와 논의 후 재결정되어야 한다며 요청한 조합원 총회도 무시되었습니다.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대회 기능을 규정한 포스코지회 규칙에는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3. 포스코지회 조합원들은 모두 개인이 금속노조 가입을 선택했고 탈퇴도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포스코지회 조합원 33명은 집행부 2명을 포함해도 4명에 불과한 대의원이 73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며 포스코지회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지회장은 지금까지 비밀 조합원들의 보호를 위해 명부를 비공개해왔고, 지부와 조합원들의 문제제기에 열담만 허용하며 선거, 총회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총회 소집 요청 과정에서도 비밀 조합원들의 보호를 위해 서명지 열람 후 총회를 개최하자고 했지만 지회는 거부했습니다.

4. 확인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다수 참여한 두 차례의 조직형태변경 총회는 과정과 절차의 문제로 반려되었습니다. 지회를 정상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임원들의 대의원대회 의결 강행은 조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 포항지청을 통해 '총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서명지가 제출되면 총회를 하겠다'는 포스코지회 입장을 확인했고, '총회 소집 요청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3이 확인되면 총회가 소집되는 것이 맞다'는 지청의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지회는 비민주적인 집행을 중단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한 조합원 총회를 즉각 소집하기 바랍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장 **황우진**



• 첨부자료9) 조직형태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중 일부(2023년 10월 31일)

합(채무자)으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다. 관계법령 및 포스코지회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신청인의 주장 요지

포스코지회는 2022. 10. 31. 제14차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는바, 대의원회는 규칙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더 이상 그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없다. 또한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규칙 제14조 제7항, 제19조 제12항의 포괄적 규정인 '기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의원회의 결의로 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결의 당시 포스코지회 대의원 9명 중 5명이 사퇴하여 4명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사건 결의는 대의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지회 대의원회는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결의는 위와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3. 판단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

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 없이도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그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포스코지회의 향후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포스코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지의 내지 신분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포스코지회가 채권자 노조 산하 지부에서 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 즉,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규칙은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하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서 그에 관한 결의를 하였는바, 이를 유효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고 할 수 없다.

② 실령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하여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대의원회 결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22. 10. 31. 기준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하여 전체 6개 선거구 중 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4명만이 남아 있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그 경우 규칙 제18조 제4호에 의하여 대의원 결원을 보충한 후 대의원회 결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포스코지회 대의원회는 남아 있는 4명의 대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3명의 찬성,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이 의결된 것으로 처리하였던바, 이 사건 결의는 규칙이 정한 대의원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③ 규칙 제14조 제4호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포스코지회 대의원회는 2022. 10. 31. 대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된 회의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후 2022. 11. 3.부터 같은 달 4.까지 및 2022. 11. 28.부터 같은 달 30.까지 개최된 두 차례의 포스코지회 총회에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절차상 위법으로 인하여 노동부로부터 조직변경 신고가 반려되었고, 이 사건 결의는 그 이후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22. 10. 31.자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안건은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므로 규칙 제14조 제4호에 의하여 대의원회는 더 이상 그에 관한 결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 6. 2.자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이 사건 결의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결의를 통해 종전 2022. 10. 31.자 결의가 철회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2022. 10. 31.자 대의원회에는 당시 재적 대의원 9명 전원이 참석하였음에 비해 이 사건 결의에는 4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2022. 10. 31.자 대의원결의 내용에 대한 유효한 철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31.